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0. No. 4, pp. 133-139, 2020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04.133

장애인 평생교육의 인식 및 과제에 관한 연구

최윤영[1*], 이세희[2]
[1]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A Study on Perception and Task of Lifelong Educat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Yun-young Choi[1*], Se-Hee Lee[2]
[1]Professor, Division of Social Work, Baekseok University
[2]Studen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범주 및 내용 등 장애인 평생교육의 인식과 과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관리자 4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FGI)를 실시하였으며, 질적자료 분석방법인 Braun과 Clarke(2006)가 제시한 주제 분석방법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장애인이 사회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장비와 편의시설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의 범주는 일상생활을 포함한 사회생활, 직업능력향상교육, 문화예술체육, 장애인 당사자가 요구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어려운 점은 전문가의 부재와 평생교육 전달체계상 소통의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은 지역사회내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평생교육 지원서비스가 요구되며, 예산 및 서비스 전달체계 등 장애인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주제어 : 장애인 평생교육, 발달장애인, 자기결정, 질적연구, 주제 분석방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erceptions and tasks of lifelong educat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e necessity of lifelong education and the range and content of it for the disabled. The research method is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4 managers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process of thematic analysis method proposed by Braun and Clarke(2006), which is one of qualitative data analysis metho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is needed, because, unlike the non-disabled, the disabled are less able to recognize and respond to social changes, which requires equipment or convenience facilities to improve it. Second, the range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was suggested as social life including daily life,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education, culture·art·physical training, and those required by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hird, the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are lack of experts and have difficulty in communicating between practitioners and the disabled. In conclusion, it is required to provide lifelong education by self-determination of the disabled in the community by priority.

Key Words :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lf-determination, Qualitative research, Thematic analysis method

*This work i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9S1A3A2099593). & Policy research Project of Chungcheongnam-do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2019).
*Corresponding Author : Yunyoung Choi(yychoi@bu.ac.kr)
Received February 25, 2020 Revised March 22, 2020
Accepted April 20, 2020 Published April 28, 2020

1. 서론

최근 들어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변화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으로 지역사회내의 자립생활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역시 강조하고 있다[1,2]. 현대사회에서 교육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자존감 및 시민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장애인 역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보편적인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법률적 근거는 2007년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3]. 또한 2015년 장애인 평생교육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내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6년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아울러 2015년에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이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은 성인기에 진입한 이후에도 지역사회내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보하고, 필요한 교육과정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이「특수교육법」에서「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사회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가 강화되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교육부의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의 가제로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4].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서비스 지원체계, 전문인력, 생애주기별 및 지역사회 특성에 부합한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물론 이미 서울시와 여러 지자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과 확산을 위해 지역평생교육 컨트롤 타워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여타의 지역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및 활성화를 위한 초기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인천 등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나 장애인 야학, 평생교육기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설한 강좌 등 장애인 평생교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나 장애유형이 제한되어 있어 일부 장애인만 이용이 가능하거나(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문해교육위주로 인지수준이 낮거나 수어통역이 필요한 장애인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강좌를 개설한 경우를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되, 다른 여타 강좌에 비해 강의 개수가 현저하게 적고[1], 공간접근성 및 온라인 강의신청 시스템과 같이 장애인을 위한 특수한 조건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은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평생교육의 범주 및 내용 등 지자체내에서 발생되는 어려운 점과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동향

2016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과정 및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2017년「평생교육법」개정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평등한 기회보장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무성이 요구되고 있다[5].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가 이론적 배경을 넘어서 정책과 실천으로 연구의 장이 확대되고 있다. 연구초기에는 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책적 배경 및 이론 중심이었다면, 점증적으로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주요 선행연구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구축 연구[6],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법규와 과제[5],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7],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식요구[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구축방안 및 발전방안 연구[8,9], 한국 장애인 평생교육의 과제[10]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주제별, 내용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방안 등 정책적 과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단위에서 적용과 장애인 평생교육 인식 및 과제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1)장애인 평생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2)장애인 평생교육의 범주와 내용은 무엇인가, 3)장애인 평생교육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4)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제언으로 설정하였다.

1) 지자체 평생교육과에서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제안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는 2개, 평생교육기관은 5개 이상 정도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인천시 연수구 사례).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인식과 내용, 현장에서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여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탐구하고자 하였으며, Table 1과 같이 충청남도의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 4명을 대상으로 2019년 8월 20일 FGI를 실시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s	Gender	Institution	Position
participant 1	M	00 Center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Director
participant 2	F	00 National Lifelong Education Center	Director
participant 3	F	00 National Lifelong Education Center	Director
participant 4	F	00 Social cooperation association	CEO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통해 수행되었다. 질적연구는 사회현장 가운데 비교적 적은 경험으로 인해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이해와 함의를 제공하고,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장점[11]이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경험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질적연구방법이 본 연구주제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raun과 Clarke(2002)가 제시한 주제 분석방법 절차[12]에 따라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자 1인이 각각 하나의 자료에 대하여 개방적 코딩을 실시한 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호집을 작성하고, 이후 각각 동일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절차 이후 대주제와 하위주제를 각각 도출하였다.

3.2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자료 분석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 향상을 위해 인터뷰자료, 메모, 현장노트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연구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개인 정보의 활용에 동의를 구하였으며, 본 인터뷰 내용에 대해 익명성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인터뷰를 위한 질문지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고 이후 현장에서 인터뷰의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자의 편견에 의한 과잉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으며, 또한 공동연구자 간의 지속적인 토의와 함의과정을 거쳐 분석한 내용의 타당성과 해석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4. 분석결과

본 연구는 전문가 인터뷰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과정분석과 유형분석 등의 지속적인 비교분석의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5개의 대주제와 15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으며, Table 2와 같이 자세한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2. Categorization of major system & subtopics

a major system	subtopics
Necessity	the rights of the people
	responding to social changes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Category	social life including daily life, vocational ability education, culture and arts, physical education, etc.
	what the disabled demand
	same category as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content	basic life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d
	education for everyday life
	contents to complement the immature parts
difficulties	the absence of an expert
	difficulties arising from lack of budget
	difficulties due to delivery system
suggestions	lifelong education based on self-determination
	establishment of Education System
	budget expansion

4.1 장애인 평생교육 필요성

인터뷰대상자들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국민이기 때문에, (비장애인에게도 당연하듯이)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고 하였다.

(생략)..UN에서도 지속가능한 교육에 평생교육이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에도 국가는 모든 국민에 대해서 평생교육을 해야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도 ...(생략)
(participant 1).

(생략)...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participant 2).

평생교육 자체가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participant 3).

비장애인과 다른 점으로는 '비장애인에 비해서 사회 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평생교육이 당연히 필요하다' 라고 하였다.

(생략)..발달장애인에게...(중략)...사회변화를 인식하고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participant 4).

4.2 장애인 평생교육의 범주

평생교육법에서는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이 평생교육의 범주에 해당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평생교육의 범주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는 '일상생활을 포함한 사회생활, (취업을 위한)직업능력 향상교육, 문화예술, 체육(participant 3)', '장애인이 요구하는 것', '평생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범주를 장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생략)...평생교육법이 앞에 6개 범주를 주고 그 다음 '등' 자가 붙어 있잖아요....(중략)...'세상 모든 것이 장애인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평생교육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요.(participant 1)

평생교육의 범주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participant 4).

저도 특별한 범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중략)...문화예술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지 더 필요한 영역인지. 그런 영역이 다를 뿐이지...(participant 2).

4.3 장애인 평생교육의 내용

전문가들은 장애인평생교육의 내용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된 기초생활(participant 3), 일상생활훈련(participant 1), 미숙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participant 2) 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영역에서 보통 일상생활교육, 자립생활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초생활과 일상생활훈련은 일반교과과정, 특수교육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과 반복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평생교육을 통해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 6진 분류표에 의하면 인문교양교육에서 건강심성프로그램(식생활교육, 생활의료교육, 보건교육)과 기능적 소양프로그램(예절교육, 가정생활)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략)...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업준비, 취업훈련, 취업적응, 사회적응 끝도 없겠죠. 문화예술 체육 취미여가활동 기타 기본적인 교육…(participant 3)

전반적으로 저희는 장애 당사자들의 자립과 사회생활능력의 향상...(중략)...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는 상담교육이 좀 더 강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participant 2)

응답자들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의도에 맞게 진행되기 위해서 교육과목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내용을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강화하고, 장애인 수준에 맞게)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participant 2). 또한 발달장애인에게 적용할만한 교육방법을 더 강조하였다(participant 1).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분야와 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4 장애인 평생교육의 어려움

(1) 전문가 부재

다른 교육에 비해 효과나 의미가 적은(participant3) 문해교육을 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하거나,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이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전문가 혹은 경험이 있는 강사가 부재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하면...(중략)...문해교육 먼저 시켜려고 해요. 발달장애인인데. 문해교육이 크게 의미가 없는 분들이 더 많은데....(생략)(participant 3).

(생략)...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중략)...가르쳐본 사람은 있지만 우리가 장애인 평생교육 교수학습법을 배워서 교사가 가르치듯이 이런 사람은 없어요...(생략)(participant 1)

(2) 예산부족에서 오는 어려움

장애인평생교육은 '인원수에 비해 예산이 많은' 경우가 발생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야(participant 2)'하기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

해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도 한다. 그러나 '강사비가 너무 적게 책정(participant 4)' 되어 있는 경우 교육의 질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왜냐면 참여하는 인원수도 별로 없고 그에 비해 들어가는 예산은 많아요. 왜냐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그만큼의 인력이나 어떤 장비들이 투입되어야하고.... (participant 2)

...(중략)...교사의 질도 퀄리티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이건 저는 뭐든지 애기를 예산으로 정리하는 것 같아서...(생략)(participant 4).

(3) 전달체계로 인한 어려움

응답자는 평생교육이 행정조직, 전달체계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것이 장애인평생교육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할 수 없는(participant 1)'요인이라고 보고 있었다. 또한 행정조직의 회계연도에 맞추다 보니 행정조직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지원사업을 해야 하고, 지원사업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의'지속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participant 2)'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생략)17개시 도시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저희들이 모아봤거든요....(중략)...과가 같은 과가 없어요...(중략)...(담당자가)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수용을 하는거예요. 그러니 강력하게 어떤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기초적 파워가 없어요.(participant 1)

...(생략)딱 1년 몇 개월만에 딱 끝나버리니까 지속성도 없고 효과성은 더욱 어려워서..(participant 2).

4.5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제언

장애인평생교육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응답자들에게 질문하였다.

(1) 자기결정에 의한 평생교육

응답자들은 '원하는 장소에서 연령과 내용에 상관없이 당사자 입장에서(participant 1)' ,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participant 3)' 혹은 '내가 원하는 활동을(participant 2)' 하는 것이 당사자들이 원하는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생략)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해요. 지금은 선택권이 없어요.(participant 3).

...(생략)원하시는 장소에서 이걸 해줄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범주는 연령이든 내용이든 그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교육 대상자 입장에서 생각해서...(participant 1).

전문가들은 '자기결정'에 의한 평생교육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생들이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범주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과목 수가 일정 개수 이상이어야 하며,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쉬운말)이어야 할 것이다. 교육당사자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안내지가 구비되어야 하며, 과목을 선택하고 신청하는 시스템 또한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신청부터 평생교육 수강 후 평가까지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혹은 지원자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교육시스템 구축

평생교육 전문가들은 장애인당사자들이 '평생교육 시스템' 안에서 교육과목 혹은 기관, 사람이 연결되는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스템 안에서는 연결할 고리가 없기 때문에(participant 3), 교육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같은 교육을 들은 사람들이(participant 2) 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략)...연결할 고리가 없어요...,(중략)...어떻게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릴까...(participant 3).

...(생략)...교육이 딱 끝나고 나서...(중략)...교육을 들은 사람들끼리 이어서...(중략)...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진행하면 좋겠다...(생략)(participant 2)

또한 평생교육실시기관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점들에 대해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해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 예를 들어 광역지자체와 평생교육기관이 함께 가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participant 3), 장애인이 차별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혹은 실무자들이 정기적,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장기 시스템을 구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생략)...공공기관이든 주민센터든 어떻게 해서든 들어와요...(중략)...광역지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벽입니다...(중략)...시스템으

로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역할들을 좀 해주시면...(생략)...(participant 3).

(3) 예산확대

응답자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이 발전적인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장애인연금이 현실화 되어 자신이 평생교육서비스를 이용할 때 직접 비용을 내는 형태가 된다면 평생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participant 4)하였다. 현재는 예산도 없지만(participant 1),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 예산편성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participant 2)고 하였다.

가장 큰 건 예산인거구요.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articipant 2).

...(중략)...연금을 제대로 현실화시키면 평생교육 전달체계도 충분히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participant 4).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평생교육의 내용 등 장애인 평생교육의 인식과 현장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장애인 평생교육의 인식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에 대해 몇 가지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장애인평생교육 현장전문가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이 장애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사회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과 비장애인 평생교육의 차이점은 '일상생활 훈련'과 같은 교육내용이라 하였으며, '장비나 편의시설' 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의 범주는 '일상생활을 포함한 사회생활, 직업능력 향상교육, 문화예술, 체육'과 '장애인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넷째, 장애인 평생교육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가가 부재하다고 하였으며, 당사자와 실무자간, 그리고 기관과 지자체 사이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사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거나, 기관자체에 예산이 별로 없어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전달체계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장애인평생교육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기관 혹은 조직이 없고, 행정조직의 회계연도에 교육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교육효과를 나타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일곱째,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제언으로 먼저 자기결정에 의해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평생교육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연결되도록 할 것,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거나 당사자가 직접 비용을 내도록 연금을 현실화할 것 등이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지자체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당사자가 국민으로서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수요자(구매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조직개편 및 사업의 효과성을 위한 유연함이 요구된다. 현재 장애인평생교육은 행정조직상 '평생교육과', '장애인복지과'에서 많은 업무 중의 하나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가 많을 것이다. 장애인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본다면, 장애인복지사업 중 하나로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참여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제도[13]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평생교육컨텐츠와 매뉴얼을 위한 사회복지영역과 평생교육 영역의 협업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혹은 용어습득이 필요할 것이며 평생교육 영역 또한 장애인에 대한 기본지식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말할 때 평생교육의 6진 분류표에 맞춰 설명을 한다거나, 쉬운 말 교재를 함께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REFERENCES

[1] H. J. Kim, I. H. Park & Y. Y. Choi. (2019). Experience and Task of Public Guardianship Service Activity for the mentally disabled - in Perspectives of advocac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5),* 228-234.
DOI : 10.22156/CS4SMB.2019.9.5.228

[2] S. H. Lee & Y. Y. Choi. (2018). A Study on Practical Recognition about Rights Advocacy of Social Workers in Disabled Welfare Center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6),* 265-271.
DOI : 10.22156/CS4SMB.2018.8.6.265

[3] E. N. Rha & D. Y. Kim. (2016). Lifelong Education Center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The Current Status & Future Direction.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3(1),* 31-64.

[4] D. S. Hong et al. (2018). *An Exploratory Research about life-long Education an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5] J. M. Baik & Y. P. Kim. (2019). Status and Tasks of Related Laws and Supporting System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 859-871.

[6] B. S. Seo, J. K. Park & C. R. Lee. (2015). The Ways to Construction for Local Lifelong Education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 Focused on Busan Metropolitan City -.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4(2),* 473-499.

[7] D. Y. Kim & W. H. Park. (2013).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8(2),* 245-271.

[8] Y. J. Kim & K. S. Kang. (2019). A Convergence Dilemma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3),* 81-91.
DOI : 10.15207/JKCS.2019.10.3.081

[9] K. Y. Kim. (2018). An Exploratory Research about Developing Lifelong Education for Learner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22(2),* 97-116.

[10] D. Y. Kim & K. J. Lee. (2018).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Needs of Lifelong Education by Workers at Facilities for Lifelong Educ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Geyeonggi Province.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3(1),* 23-47.

[11] I. S. Kim. (2016). *Qualitative research methode and Analysis in Social Work.* Jipmoondang.

[12] V. Braun & V. Clarke.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13] J. H. Jeong, S. Y. Lim & H. J. Kang. (2018).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for the Participation in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by Types of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 Focusing on Chungcheongnam-do.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 331-340.
DOI : 10.15207/JKCS.2018.9.1.331

최 윤 영(Yun-young Choi) [정회원]

- 1994년 2월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문학사)
- 1996년 8월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 2002년 2월 : 독)브레멘대학교 장애인복지(Diplom석사)
- 2005년 4월 : 독)브레멘대학교 장애인복지(Dr.phil.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장애인권, 권리옹호
- E-Mail : yychoi@bu.ac.kr

이 세 희(Se Hee Lee) [정회원]

- 2003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6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5년 6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08년 ~ 현재 :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근무
- 관심분야 : 사회복지, 권리옹호
- E-Mail : lshe5@nate.com